

2021년 12월 노·사 협의체 회의

※ 전회 미결사항에 대한 협의

- 없음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찬성	반대
----	----

① 심의, 의결사항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244조(방화조치)

-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상치, 소각로, 절제굴뚝, 그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로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사항, 보호구의 종류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위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4	
4	

▶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불량한 경우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4	

▶ 제620조(환기 등)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	--

▶ 제621조(인원의 점검)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4	
---	--

▶ 제622조(출입의 금지)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	--

-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밀폐공간)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4	
---	--

▶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4	
4	

-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	--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원을 분할 교육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 화학물질 취급 대상 근로자는 MSDS 물질안전보건 교육에 참석한다.

▶ 밀폐공간 작업전 대상자 및 해당작업 관리감독자는 보건관리자에게 밀폐공간 교육을 수료한다.

4	
4	
4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작업환경측정 2022년 03월 실시 예정

4	
---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해당사항없음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해당사항없음

4	
---	--

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해당사항없음

4	

8.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흑한기 안전교육장 근로자쉼터 이용

4	
---	--

9. 그 밖의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1) 작업 시작 시간

- 08:00 시작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예방을 위하여 2M이상 거리두기 유지 상태에서 TBM 실시

4	
---	--

위 사항에 대하여 노.사 협의체에서 동수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장 위원이 상호 협의한 사항으로써 협의된 내용은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협의함.

사 진 대 지



2021년 10월 노·사 협의체 회의

※ 전화 미결사항에 대한 협의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찬성	반대
----	----

① 심의, 의결사항

- ▶ 장비 작업시 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 ▶ 연약 지반은 작업전 치환을 통한 지반 지지력을 확보하고 작업하기로 한다.
- ▶ 현장 반입장비에 대하여 작업투입 전 비파괴 검사를 필히 시행한다.
(항타기,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차(스카이), 펌프카) *유효기간 6개월*
- ▶ 주간위험성평가회의는 금요일 11:00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 체결케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한다.

4	
4	
4	
4	
4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게시 하도록 한다.
- ▶ 각종 화학물질은 현장 반입전 보건관리자에게 화학물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4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월 1회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다
(당사 : 현장소장 / 대상 : 당사 관리감독자 및 협력회사 소장)
(협력회사 : 협력회사 소장 / 대상 : 협력회사 관리자 및 작업팀장)
-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시 명예통역관을 지원한다.
- ▶ 화학물질 취급 대상 근로자는 MSDS물질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다.
- ▶ 월 1회 2시간이상 협력회사 자체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협력회사 : 협력회사 소장 / 대상 : 협력회사 관리자 및 근로자)
- ▶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VISA 관련)만 취업을 제한한다.

4	
4	
4	
4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2021년 10월 작업환경 측정시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건강검진 결과 요관찰자, 유소견자 및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건관리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	--

- ▶ 전근로자 대상 배치전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 ▶ 근로자 심혈관계 질환 관리 등 개인건강관리 철저

-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 한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노·사 협의체에서 동수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장 위원이 상호 협의한

사항으로써 협의된 내용은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협의 함.

|

사 진 대 지



2021년 9월 노·사 협의체 회의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찬성	반대	기권
----	----	----

① 심의, 의결사항

▶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3		
---	--	--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제172조(접촉의 방지)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접촉 방지)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향타기 또는 향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접촉의 방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 위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하도록 한다.

▶ 건설 장비의 설치 된 안전장치는 임의로 해체 하지 않는다.

3		
---	--	--

▶ 장비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장비주변 경계구역 설정하여 주변작업자 접근금지.

3		
---	--	--

▶ 천공기, 크레인 작업시 전도방지 조치실시 -지반정지 및 철판 설치후 작업.

3		
---	--	--

▶ 화기작업 발생 시 화기작업허가서 제출 및 화기감시자 배치하여 작업 실시한다.

3		
---	--	--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적정의견으로 의결하고 안전교육장에 비치한다.

3		
---	--	--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이행하여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 ▶ 비상사태 모의훈련 10월 실시 예정
- ▶ 화학물질 취급 대상 근로자는 MSDS 물질안전보건 교육에 참석한다.
- ▶ 건설공사장 방역지침으로 TBM시 2M이상 거리두기 및 소규모 진행

3		
3		
3		
3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작업환경측정 1회차: 2021년 최초(9월 07일) 실시 예정

3		
---	--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신규채용자 채용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 간이진단키트 사용.
- ▶ 건강검진 결과 요관찰자, 유소견자 및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찰 및 상담을 실시한다.
- ▶ 전근로자 대상 배치전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3		
3		
3		
3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산업재해 0건, 발생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

3		
---	--	--

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중대재해 발생시 원인조사는 대외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로 한다.
- ▶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한 후에는 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7일 안에 작성하여 전직원 및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 재발방지 대책 수립후 작업 실시토록한다.

3		
3		
3		

8.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 의결사항

- ▶ 현장 내 전 근로자 코로나 19예방 및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KF94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
- ▶ 협력회사 사무실, 컨테이너, 도구방 등 근로자의 휴식공간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 흡연은 흡연 장소에서만 한다.

3		
3		
3		

9. 그 밖의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1) 작업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 작업시작 : 08:00 (소규모 TBM실시)

종료시간 : 16:00~17:00

3		
---	--	--

2)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1. 이동통신기 및 무전기를 통한 연락방법

3		
---	--	--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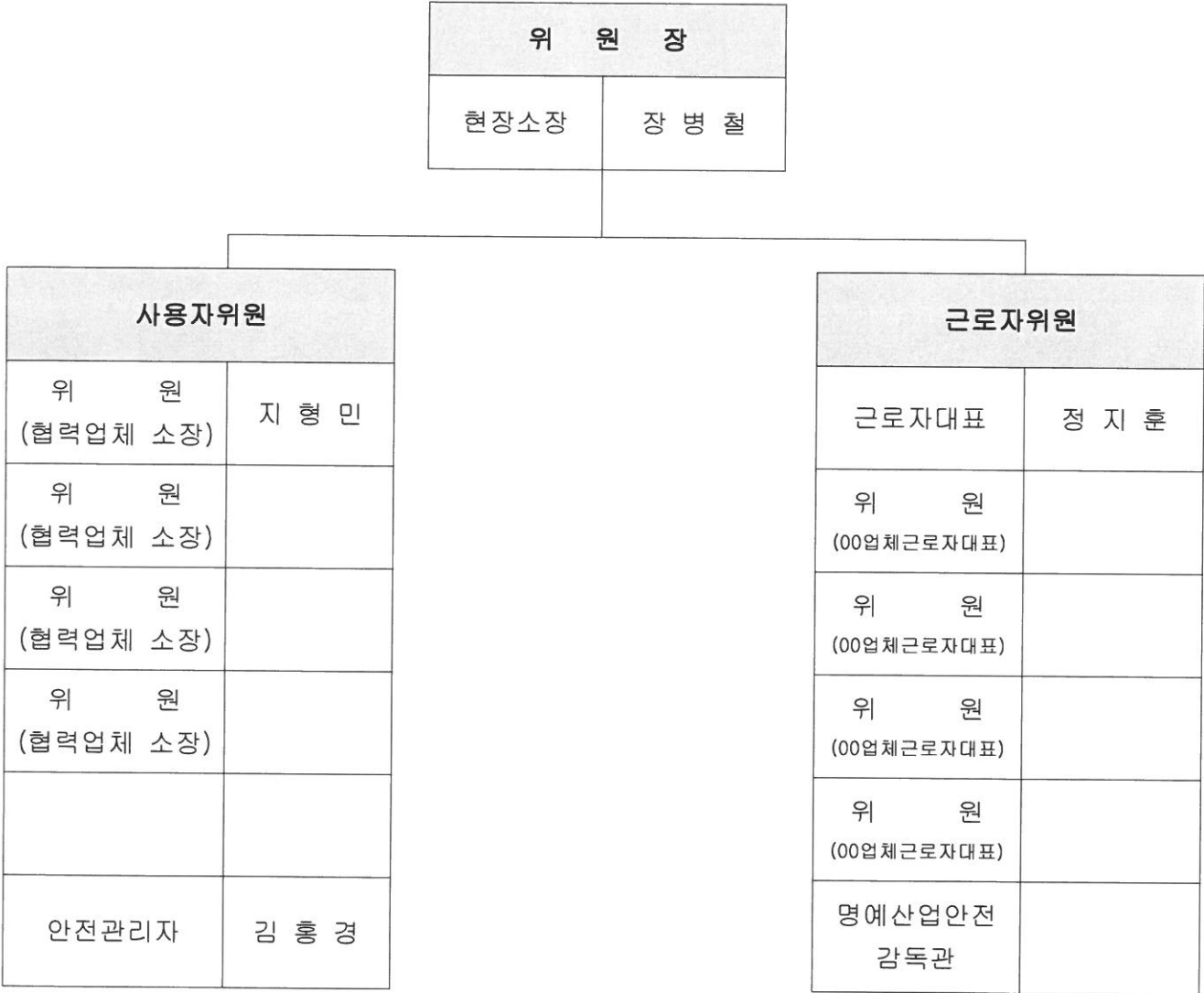
- 비상사태 대비 모의훈련 실시에 대한 의결
- 비상 시나리오와 개인 업무 분장 숙지 (비상사태 대비 계획서 참조)
- 최초 목격자 휴대전화 또는 무전기로 현장 사무실 및 현장 책임자에게 전파 실시
- 개인업무 분장에 따른 신속한 조기 대응
- 근로자 대피 및 응급 구호 활동
- 피해사항 보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피난안내도 첨부

3		
---	--	--

사진대지



노사협의체 조직도



- * 설치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인 건설현장
- * 인원구성 :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수로 구성
- * 협의체의 주기 : 2개월마다(정기회의)
- *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의 자격 : 공사금액 20억 이상 협력업체 사업주(현장소장) 및 근로자대표